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9월 3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8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년 9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행, 2000년 영등포구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제도 개선(안)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 가목(1),(2)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내지 제5호 내용개정(안 제2조)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제5항)
- 배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대형폐기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배출 전까지 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2항4호 및 6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대형폐기물 수거 전까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즉시 환불하여 주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27조제3항,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민창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은 사업장폐기물은 종전의 1회 1톤 이상/1주에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 하고, 건설폐기물은 토사를 제외한 폐기물로서 1회 1톤 이상/1주에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지정/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리대행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는데, 이는 일반가정에서 소규모 자체 공사후 발생될 수 있는 5톤 미만의 소량의 공사장 폐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활용토록 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대형폐기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내용변경으로 본 건은 우리구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개선요구된 사안으로 배출방법 내용중 “배출 3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배출 전”으로 변경하여 신고 후 즉시 배출, 수거가 가능토록 한 것이고 신설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제도는 각 동에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시 배출신고(수수료 납부)후 수거 전에 재활용 및 인근주민에게 무상 사용토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관계를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에 별도의 환불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환불을 하지 아니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환불제도를 명문화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년월일 : 2001. 9. 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행, 2000년 영등포구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제도 개선(안)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 가목(1),(2)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내지 제5호 내용개정(안 제2조)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제5항)
- 배출 3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대형폐기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배출 전까지 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2항4호 및 6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대형폐기물 수거 전까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즉시 환불하여 주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27조제3항, 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2항4호, 6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중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로 하고 제5호중 “발생하는 순수토사를 제외한 폐기물로서 1회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4호중 “배출 3일전에”를 “배출 전에”로 6호 “기타 생활폐기물 : 배출 3일 전에”를 “기타 생활폐기물 : 배출 전에”로 한다.

제15조제4항 “기타 생활폐기물”을 “기타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 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 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발생하는 순수토사를 제외한 폐 기물로서 1회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 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신설) (신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 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 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 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 한다)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 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 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 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 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 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1. ~ 3. (생략) 4. 대형폐기물 : <u>배출 3일 전에</u>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5. (생략) 6. 기타 생활폐기물 : <u>배출 3일 전에</u>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④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또는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u>기타 생활폐기물</u>을 담는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대형폐기물 : <u>배출 전에</u>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생활폐기물 : <u>배출 전에</u>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④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또는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u>기타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u>을 담는다.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한다.</u> 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u>

별지 제10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						처리기간
※ 취소신고번호 : 배출신고번호 :						즉 시
신 고 일 자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취소(변경)사유			
취 소 내 역	폐 기 물 명	규격	수량	기납부수수료	환불신청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동장 귀하						
수 령 증 금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 령 인 : (인) 동장 귀하						

